

의안번호	제230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
2023. 11. 17.

예산군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
예 산 군 수

예산군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0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17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 교통약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건사업 활성화로 주민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수단 등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나. 국민영양관리시행 계획 수립 추가(안 제4조)
- 다. 홍보물·경품 지원 대상 문구 수정(안 제11조)
- 라. 이송·돌봄 지원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7조)
- 마. 지역 보건사업 유공자(군민, 기관, 단체 및 공무원)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바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9조,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,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 【붙임 1】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타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: 2023. 10. 24. ~ 11. 13. [20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 분석: 【붙임 3】

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의2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치매관리법」 제5조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 제5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암관리법」 제4조”를 “「암관리법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구강보건법」 제4조의2”를 “「구강보건법」 제4조의2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”를 “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4조”를 “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4조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“「결핵예방법」 제4조”를 “「결핵예방법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(이하“보건소””를 “(이하 “보건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사람에 대하여 지역 보건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”을 “사람에게 지원되는 차량으로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(협약체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이송지원”이란 의료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

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교통수단 운영

나. 교통비 등의 지원

7. “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 돌봄지원”이란 의료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8. “응급환자”란 질병, 분만,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의2에 의한 건강증진실행계획 및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,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·도안·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·교육용 활동복”을 “보건사업 홍보물품 지원 및 행사·교육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통수단 제공 및 이송지원

제15조제2항 중 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시행규칙)”을 “(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·돌봄지원 및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진료이송·돌봄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
2.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이송과 돌봄이 필요한 자

② 군수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는 이송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포상)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, 기관,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「예산군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보건관련 기념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<u>의2</u>에 규정된 보건의 날</p> <p>나. 「치매관리법」 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</p> <p>다. 「암관리법」 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</p> <p>라. 「구강보건법」 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 날</p> <p>마.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</p> <p>바.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4 <u>조</u>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</p> <p>사. 「결핵예방법」 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</p> <p>아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“건강지도자”란 예산군민(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 <u>조의2</u>-----</p> <p>나. 「치매관리법」 제5<u>조</u>----- -----</p> <p>다. 「암관리법」 제4<u>조</u>----- -----</p> <p>라. 「구강보건법」 제4<u>조의2</u>----- -----</p> <p>마. 「모자보건법」 제3<u>조의2</u>----- -----</p> <p>바.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4 <u>조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사. 「결핵예방법」 제4<u>조</u>----- -----</p> <p>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

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 중 예산
군보건소 (이하“보건소”라 한
다)에서 주관하는 건강이론교
육과 전문실기, 체험 교육 등
에 대한 건강도우미 양성교육
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과
각종 보건행사에 자원봉사활
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5. “교통수단”이란 지역보건사
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
지역 보건사업을 행하는 장소
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
량을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(이하 “보건소”-----

5. -----
-----사람에게 지
원되는 차량으로 보건소 사업
용 차량 및 임차차량(협약체
결 등)---

6. “이송지원”이란 의료취약계
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
보장하고 건강을 보호·증진
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
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교통수단 운영

나. 교통비 등의 지원

7. “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 돌
봄지원”이란 의료취약계층의
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
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
하여 교통수단 및 돌봄 등을
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·교육용 활동복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이용자 등 편익제공)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다.

1.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 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

2. (생략)

제15조(위탁) ① (생략)

② 1항에 따른 비용 또는 대행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이용자 등 편익제공) -----

-----.

1. 교통수단 제공 및 이송지원

2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-----

-----.

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7조(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·돌봄지원 및 제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진료이송·돌봄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

<신 설>

<신 설>

어려움을 겪는 자

2.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이송
과 돌봄이 필요한 자

② 군수는 「응급의료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
응급환자는 이송대상에서 제외
한다.

제18조(포상) ① 군수는 지역보건
사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
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, 기관,
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
수 있다.

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
「예산군 포상 조례」를 따른
다.

【붙임 1】 관계법령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2. 영양관리
3. 신체활동장려
4. 구강건강의 관리
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6.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·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역보건법」

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 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 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 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 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
 - 아. 난임의 예방 및 관리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국민영양관리법」

- 제8조(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붙임 2】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예산군 보건소장 최승묵

【붙임 3】 성별영향평가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
관리번호	2023A충남예산068		
정책명	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충청남도 예산군	
	부서명	건강증진과	
	담당자명	박진아	전화번호 041-339-6071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9월 25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건강증진과)	'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'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 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09월 26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이용미/041-339-7912)</p> <p>건강증진과장 귀하</p>			

담당자 현황 【보건소장 최승묵, 건강증진과장 박경자, 모자보건팀장 김순식, 담당자 이혜인 ☎339-6043】

